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16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전재수·조 국·허 영

신영대 • 김정호 • 민홍철

김태선 • 복기왕 • 위성곤

이학영 · 허성무 의위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 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종류로"를 "8종류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생법원과" 를 "회생법원·해사전문법원과"로 한다.

8. 해사전문법원

제5조제2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를 "행정법원·회생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를 "행정법원·회생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의"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해사전문법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해사전문법원과"로 한 다.

제9조의2제1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를 "행정법원·회생법원 및 해사전문법원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를 "행정법원·회생법원 및 해사전문법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생법원 사무국장"을 "회생법원 사무국장, 해사전문법원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회생법원 합의부"를 "회생법원 합의부, 해사전문법원합의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정법원단독판사의"를 "가정법원단독판사의"를 "가정법원

제3편에 제7장(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해사전문법원

- 제40조의8(해사전문법원장) ① 해사전문법원에 해사전문법원장을 둔다.
 - ② 해사전문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③ 해사전문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 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해사전문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40조의9(부) ① 해사전문법원에 부를 둔다.
 - ② 해사전문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40조의10(심판권) ① 해사전문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
 - 1.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제5편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 사건(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한다)

- 2.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 각 목의 민사사건 가. 선박의 도선 및 예선과 관련된 다툼
 - 나. 선박의 건조, 수리, 매매 등과 관련된 다툼
 - 다.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물권과 관련된 다툼
 - 라.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과 관련된 다툼
 - 마. 선박의 항행 기타 관리 등을 위하여 공급된 물품 및 용역 등 과 관련된 다툼
 - 바. 선박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및 그에 부수하는 감수·보 존처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
 - 사. 「해운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분야에서의 다툼
 - 아.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분야에서의 다툼
 - 자. 항만하역근로자 등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된 다툼
 - 차.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의 운용, 이용 및 그 밖에 선박투자 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다툼
 - 카. 마리나의 개발·관리·운영 및 해양레저 관련 분쟁
 - 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 4.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한 외국 중재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

건

- 가. 해사중재합의서 효력승인신청사건
- 나. 외국해사중재판정서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 다. 외국법원의 판결서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민사사건
- ② 해사전문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한다.
-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2. 해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3. 해사전문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44조제2항 중 "회생법원장은"을 "회생법원장, 해사전문법원장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음의 <u>7종류로</u> 한다.	<u>8종류로</u>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 <신 설></u>	8. 해사전문법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	③
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u>회</u>	<u>ই</u>
<u>생법원과</u> 지방법원 및 가정법	<u>생법원·해사전문법원과</u>
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	
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	
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	
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판사) ① (생 략)	제5조(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	②
법원·가정법원· <u>행정법원 및</u>	<u>행정법원·회</u>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생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제6조(직무대리) ①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 특허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	
원· <u>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u>	<u>행정법원</u> ·회생법원 또는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해사전문법원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③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지방법원·가정법원· <u>회생</u>	④ <u>회생</u>
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법원·해사전문법원과
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	
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	
사한다.	
⑤ 지방법원·가정법원· <u>회생</u>	⑤ <u>회생</u>
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법원·해사전문법원과
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	
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	
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u>.</u>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	제9조의2(판사회의) ①
· 특허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	
원· <u>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u>	<u>행정법원·회생법원 및</u>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해사전문법원과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략)

② (생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
법원·가정법원·<u>행정법원</u> 및
<u>회생법원과</u>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

② (생략)

(局)을 둘 수 있다.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 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 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 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 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 (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 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 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 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 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 사관 ·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제10소(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1)
<u>행정법원 •</u>
회생법원 및 해사전문법원과
의생합전 옷 에까신문합전자
① (청체크 가O)
② (현행과 같음)
③
<u>회생법</u>
이 지므구자 케지저므버이 지
원 사무국장, 해사전문법원 사
<u>무국장</u>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 략)

-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 저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 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합의부, <u>회생법원 합의부</u>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 2. 지방법원단독판사, <u>가정법원</u>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
 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
 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3. (생 략) <u><신 설></u> <신 설>

,
1 회생법원 합의부, 해 사전문법원 합의부
3. (현행과 같음)
제7장 해사전문법원
<u> </u> 40조의8(해사전문법원장) ① 해
<u>사전문법원에 해사전문법원장</u> 으 두다
으 テル

<신 설>

<신 설>

- ② 해사전문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③ 해사전문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해사전문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 제40조의9(부) ① 해사전문법원에 부를 둔다.
 - ② 해사전문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40조의10(심판권) ① 해사전문 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 판한다.
 - 1.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제5편이 적용되거나 준용 되는 민사사건(외국법이 준거 법인 사건을 포함한다)
 - 2.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 각 목의 민사사건
 가. 선박의 도선 및 예선과

관련된 다툼

- <u>나. 선박의 건조, 수리, 매매</u> 등과 관련된 다툼
- 다.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물권과 관련된 다툼
- 라.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과 관련된 다툼
- 마. 선박의 항행 기타 관리등을 위하여 공급된 물품및 용역 등과 관련된 다툼
- 바. 선박에 대한 보전처분,강제집행 및 그에 부수하는 감수·보존처분 등과관련하여 발생한 다툼
- 사. 「해운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분야에서의 다툼
- 아. 「항만운송사업법」이 적 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분 야에서의 다툼
- 자. 항만하역근로자 등 「항 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 거나 준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된 다툼

- 차.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
 회사, 자산보관회사의 운
 용, 이용 및 그 밖에 선박
 투자 업무에 관하여 발생
 한 다툼
- 카. 마리나의 개발・관리・운영 및 해양레저 관련 분쟁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사항
- 4.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한 외국중재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 <u>가. 해사중재합의서 효력승인</u> <u>신청사건</u>
 - <u>나. 외국해사중재판정서의 승</u> <u>인 및 집행신청사건</u>
 - 다. 외국법원의 판결서의 승 인 및 집행신청사건
-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민사사 건
- ②해사전문법원의합의부는다음각호의사건을제1심으로한다.
-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제44조(보직) ① (생 략) 저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 법원장, <u>회생법원장은</u> 15년 이 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해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해사전문법원판사에 대한 제
<u>척·기피사건</u>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
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u>사건</u>
세44조(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생법원장, 해사전문
법원장은